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. 11. 27 선고 2020가합10179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A, 박종훈

피고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준

피고보조참가인1. D

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E

2. F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

담당변호사 천성훈, 김유진, 류우현, 정수연, 박기태, 김성호

변론 종결2020. 11. 13.

판결 선고2020. 11. 27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. 10.

26. 접수 제103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G은 망 H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의 장남이고, D은 망인의 처이며, F는 망인의 차남이다.

나. 망인은 2018. 1. 22.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유언'이라 한다), 같은 해 2. 7. 사망하였다.

다. 2018. 5. 15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, G은 4/7 지분에 관하여, D은 3/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3/7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'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

라. D은 2018. 10. 26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/7 지분에 관하여 2018. 10. 25.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마. G은 2018. 11.경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18느단10388호로 이 사건 유언에 관한 유언의 증서 검인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5. 10. 위 유언 증서에 대한 검인을 실시하였다.

바. G은 2019. 5. 23.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102207호로 '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18느단10388호 유언의 증서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. 5. 10. 검인한 망인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함을 확인한다.'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9. 8. 23. G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.

사.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.

(1) 경기도 부천시 I(J 130.5제곱미터, K 104.4제곱미터, L 891.4제곱미터, M 441.2제곱미터) 토지 및 동 지상 건물과 본인의 유체 동산 및 대여금 채권 일체를 장남 G(N생)에게 물려준다.

(2) 서울시 서대문구 ○ 대지 114.7제곱미터 동 지상건물 275.18제곱미터와 경기도 부천시 P(Q 492.3제곱미터)와 동 지상건물을 차남 F(R생)에게 물려준다.

(3) 남양주시 B 소재 선산은 G와 F가 5:5로 공유하도록 한다.

이 유언은 나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
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법무법인 B(담당변호사: A 변호사)를 지정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,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,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,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,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(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26920 판결,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20840 판결).

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유언에 관한 유언집행자임을 전제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.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유언의 유언집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1.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유언의 문언에 의하면,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는 원고가 아니라 '법무법인 B'임이 분명하고(법무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), 이 사건 유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언의 유언집행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아닌 원고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.

3. 가정적 판단

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유언의 유언집행자라고 하더라도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유언에 의하면 D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,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가정적 판단

1) 관련 법리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,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(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0다73445 판결,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7다22859 판결,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다24281 판결).

2)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이 사건 유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망인이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것으로서 특정유증이다. 따라서 유증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인 D, G, F에게 귀속되고, 유증을 받은 G은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유언을 통해 망인이 G에게 특정유증한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, D, G, F 사이에 2018년 2월경 내지 같은 해 5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이나 이에 기한 이 사건 제1, 2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최성수

판사하성우

판사임한아

별지